OQS인증원

인증복구 기준(인증만료일 경과/갱신심사)

주소:(06302)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 169 범호빌딩 3 층(도곡동 453-15)/전화:(02)782-8114 / 팩스:(02)782-8110

인증조직이 인증만료기한 내에 갱신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인증서는 무효화되며, 재 신청 시 최초심사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인증조직이 인증만료일 이전에 인증복구에 대한 의지표명(심사연기신청서 제출)시
인증만료일 기준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인증서를 복구할 수 있다.

1. 인증만료일 경과 후, 인증표시의 사용 제한

1.1 인증표시의 사용 제한

인증만료일이 경과되면, 인증복구에 대한 의지표명(심사연기신청서 제출)에 관계없이 인증서가 무효화되며, OQS의 "**인증표시의 사용 및 홍보 기준**"에 따라 모든 형태의 매체 (인증기업 홈페이지, 광고 또는 홍보물 등)에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 **"인증표시의 사용 및 홍보기준" 열람 방법:**
OQS 홈페이지(고객지원->고객지원서비스)에 게시된 "인증표시의 사용 및 홍보기준"

1.2 인증마크 오용 시 조치

인증조직이 인증만료일 경과 후, 인증 무효화 상태에서 인증표시를 계속 사용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2. 인증복구 프로세스

인증부서장은 갱신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단계에 따라, 인증무효화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인증조직에게 **메일 또는 공문으로 안내**하고, 인증만료일 경과 후 인증복구 프로세스를 착수하여야 한다.

단계 (시점)	관련 문서	내용 요약
1단계 (인증 만료일 전)	**갠신심사 안내메일 발송**	**갱신심사 안내 메일 공지(인증기관)** - 시기: 인증만료일 이전(가능 한한 1개월 이전) - 수단: 메일로 발송(일상적 심사일정 협의 발송메일 활용) 예시) 갱신심사는 인증만료일 이전에 실시되어야 하며, 인증만료일이 경과된 경우, 인증서는 무효화되며, 인증표시의 사용이 전면 제한됩니다. 다만, 인증만료일 이전에 심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인증만료일 기준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갱신심사가 진행되며, 인증서가 복구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인증 만료일 전)	**심사연기 신청서 제출**	**심사연기 신청서 제출(인증기업)** - 시기: 인증만료일 이전(가능 한한 1개월 이전) - 수단: 심사연기신청서 첨부 메일로 인증기관에 제출 예시) 회사 경영여건 상 인증만료일 이전에 갱신심사를 받을 수 없으나, 인증만료일 6개월 이전에 인증복구를 희망하며, 첨부와 같이 심사연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단계 (연기신청서 접수 직후)	**심사연기 신청서 검토/회신**	**심사연기 신청서 검토 및 회신(인증기관)** - 시기: 심사연기 신청서 접수 직후 - 수단: 심사연기 신청서에 심사연기(복구) 타당성 검토 예시) 심사연기(복구) 타당성 검토결과 인증복구프로세스가 승인되었습니다. 인증만료일 6개월 이내에 갱신심사 신청서 제출/심사수행하시기 바랍니다.
4단계 (인증만료일 +6개월 전)	**갱신심사 신청서 제출**	**갱신심사 신청서 제출(인증기업)** - 시기: 인증만료일+6개월 이전 - 수단: 갱신심사신청서 첨부 메일로 인증기관에 제출 예시) 인증복구를 희망하며, 첨부와 같이 갱신심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단계 (인증만료일 +6개월 전)	**인증복구 갱신심사 실시**	**인증복구(갱신심사) 및 인증서 발행** - 시기: 인증만료일+6개월 이전 - 수단: 인증복구를 위한 갱신심사 수행+인증결정+인증서 발행 예시) 첨부와 같이 인증서와 인증안내문을 보내 드립니다.

1. "**심사연기 신청서의 검토 결과**"는 인증결정검토서를 대신할 수 있다.
2. **인증복구/갱신심사 이후**에는 "**인증결정검토서**"에 따라 **인증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